

2023학년도 2학기 신촌·국제캠퍼스 학부생 입대휴학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개강일(9월 1일)** 이후 입대 예정자는 먼저 일반휴학을 신청하고 추후 입대하기 전 입대휴학을 추가로 신청해야 합니다. 2023. 11. 14.(화) 이전 입대할 경우 2023학년도 2학기는 일반휴학이 아닌 입대휴학 학기로 인정되나, 11. 15.(수) 이후 입대자는 일반휴학 학기로 인정됩니다.

※ 재학 중 학기 2/3선(11월 14일) 다음 날인 11월 15일부터 입대하는 자는 해당 학기와 성적이 인정되어 휴학 신청일자에 관계없이 등록금이 반환되지 않음

■ 신청 기간

휴학신청 및 승인시점	휴학 신청 자격	수업료 반환
2023. 8. 1.(화) 10:00~ 9. 14.(목) 17:00	1) 2023. 9. 14.(목)까지 입대하는 자는 등록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입대휴학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 내 입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입영일 전까지 즉시 입대휴학 신청 가능	수업료 전액
2023. 9. 15.(금) 9:00~ 11. 14.(화) 17:00	2) 2023. 9. 14.(목) 이후 입대하는 자는 2023. 9. 14(목)까지 우선 일반휴학을 신청하고 추후 입대휴학을 추가로 신청해야 등록금 납부 없이 신청 가능 ※일반휴학을 신청하지 않고 9.14.(목)이 경과한 경우, 등록금을 납부한 후에만 입대 휴학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 내 입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입영일 전까지 휴학 신청 가능	휴학승인시점별 수업료 반환율 적용
2023. 11. 15.(수) 9:00~ 2024. 1. 31.(수) 17:00	2023. 11. 15.(수)부터 입대하는 자(재학생, 휴학생 모두)는 <u>입영일 1주일 전부터 입영일 전까지</u> 휴학 신청 가능	수업료 반환 없음

※ 2023년 2월 이후에 입대휴학을 하는 경우 2024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 기간에 맞춰 입대휴학 신청할 것

■ 신청 방법 및 승인 방식

- 신청 방법: 연세포탈서비스 ⇨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 ⇨ 휴학신청 ⇨ 휴학구분:입대휴학 신청 및 증빙서류 등재(입영통지서 첫 장, 2MB 이하)
- 승인 방식: 연세포탈서비스에 등재된 증빙서류를 담당자가 검토 후 승인
- 입대휴학은 신청과 동시에 자동 승인되는 일반휴학과 승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승인 시점에 따라 등록금 반환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유의사항
 - 증빙서류는 이미지 파일, PDF, 한글 파일 형태로 등재 가능
 - 증빙서류는 2MB 이하일 경우에만 등재 가능

■ 수업료 반환

휴학승인시점	수업료 반환율	비고
2023. 9. 14.(목) 17:00 까지	전액	
10. 2.(월) 17:00 까지	수업료의 5/6	
10. 30.(월) 17:00 까지	수업료의 2/3	
11. 14.(화) 17:00 까지	수업료의 1/2	학기 2/3선

가. 수업료 반환은 학기별 등록금 반환 일정에 준함

나. **수업료 반환 소요 기간 : 휴학 승인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약 2주**

다. 반환 계좌 : 학생 본인의 연세포탈서비스 등록 계좌 (계좌 정보 미등록시 휴학 신청 불가, 휴학 신청 시점에 등록된 계좌로 반환 [휴학 후 수정 시 미적용])

1)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반환액은 대출받은 기관으로 상환

2) 장학금 수혜자는 학생지원팀(학생회관 218호, ☎ 02-2123-8191~2)에 장학금 취소 신청을 해야 휴학 신청 가능

■ 재학 중 입대휴학자의 성적 처리 및 학기 인정

가. 학기 2/3선(2023. 11. 14.)까지 입대

- 해당 학기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

- 해당 학기는 입대 휴학 학기로 인정(일반휴학 “휴학학기” 수에 포함되지 않음)

나. 학기 2/3선 후(2023. 11. 15.부터) 입대

- 해당 학기의 중간시험 성적을 학기말시험 성적으로 대체함.

단, 성적평가는 전적으로 담당교수의 역할이므로 반드시 담당 교수에게 입대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수업 및 평가 대체여부를 확인해야 함

- 해당 학기는 재학 학기로 인정

다. 관련 규정: 학사에 대한 내규 제25조

학교 홈페이지 ⇨ 연세소개 ⇨ 대학현황 ⇨ 규정집 ⇨ 본문 ‘휴학’ 검색하여 확인 가능

■ 일반휴학 중 입대휴학자의 휴학기간

가. 학기 2/3선(2023. 11. 14.)까지 입대: 해당 학기는 일반휴학 ‘휴학학기’ 수에 포함되지 않음

나. 일반휴학 중 학기 2/3선 경과 후 입대: 해당 학기는 일반휴학 ‘휴학학기’ 수에 포함됨

다. 일반휴학 중 입대 시에는 입대 전까지 입대휴학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입대휴학 승인을 받지 않고 일반휴학 중 군 복무를 한 경우에는 일반휴학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

라. 일반휴학기간은 통산하여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음. 단, 건축공학 전공 내의 건축학(5년제) 과정은 7학기를 넘지 못하고, 편입 학생의 휴학기간은 편입학 이후 잔여 재학연한의 1/2을 넘지 못함

마. 휴학학기 수 조회 : 연세포탈서비스 ⇨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 ⇨ 학생 - 학적정보조회

■ 입대휴학의 취소 및 재입대

가. 입대휴학이 승인된 이후 귀가 조치나 입영 연기 등으로 인하여 입대일이 변경되면 해당 결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증빙서류(귀가증명서 등)와 입대휴학 취소원을 교무처 학사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입대휴학을 취소해야 함

나. 입대휴학을 취소할 경우 학적 상태는 직전 상태(재학 또는 일반휴학)로 환원됨

다. 재입대가 확정되면 [학교 홈페이지 ⇨ 학사지원 ⇨ 각종 신청서 양식 모음]에서 ‘입대휴학원서’를 내려 받아 입영통지서와 함께 학사포탈시스템으로 신청

■ 유의사항

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합격생 (캠퍼스내/간 복수전공은 해당사항 없음)의 첫 학기에는 질병, 임신, 출산, 입대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음

나. **2024년 2월 졸업신청자는 졸업신청 취소를 해야 휴학 신청 가능**

다. 미납 도서가 있는 경우 반납 후 휴학 신청 가능(학술정보원 학술자료운영팀 문의 ☎ 02-2123-6100)

라. **주요 학사 안내와 긴급 연락을 위해 휴학 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연세포탈서비스에 직접 수정해야 함**

마. 전역 후 복학이 승인된 학생은 예비군연대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자동 전입 처리되나 전역 전 복학 허가자는 개별 신고하여야 함(예비군연대, ☎ 02-2123-8461)

바. 입대휴학 관련 상세 규정: ☑학칙 제8장, ☑학사에대한내규 제6장, 제8장 등

학교 홈페이지 ⇨ 연세소개 ⇨ 대학현황 ⇨ 규정집 ⇨ 본문 ‘휴학’ 검색하여 확인 가능

사. 휴학 관련 문의처

- 1) 휴학관련 FAQ: 학교홈페이지 ⇨ 학사지원 ⇨ 학사행정 ⇨ 휴학
- 2) 교무처 학사지원팀
 - ☎ 02-2123-2090/2093: 휴·복학 추가 문의
 - ☎ 02-2123-3200 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
- 3) 휴학 중 건강공제회 가입: 학생건강공제회(☎ 02-2123-3350)